신고요건

인적 요건 | 물적 요건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알아보기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수 없는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수 없는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

-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알아보기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수 없는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단,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없음

교과부 고시 제5조

제5조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기능 대학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

②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재외동포는 포함하고 산업연수생은 제외한다)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1.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동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2. 연구소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3.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회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해설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일반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 야간과정을 수학하는 경우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경우에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해외사무소 파견,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 시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병역특례), 산업연수생(외국인)으로 복무 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자 단기근로자

- 기술고문 등 상시근로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 청년인턴제 등 정부의 인건비 직원을 받아 임시직으로 채용한 자

○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업무영역이 명확한 감사
- 기술자문위원,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해설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일반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 야간과정을 수학하는 경우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경우에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해외사무소 파견,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 시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병역특례), 산업연수생(외국인)으로 복무 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자 단기근로자

- 기술고문 등 상시근로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 청년인턴제 등 정부의 인건비 직원을 받아 임시직으로 채용한 자

○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업무영역이 명확한 감사
- 기술자문위원,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